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(안 제2조제1항제3호)

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

나.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(안 별표 2)

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.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가목1) 및 2)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(平水)구역”을 “평수(平水)구역”으로, “선박.”를 “선박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”으로 하고, 같은 목1) 및 2)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목 1) 및 2)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1) 및 2)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”을 “연해구역”으로, “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.”를 “사용되는 선박 및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”으로 하며, 같은 목1) 및 2)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목 1) 및 2)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3호가목1)·2)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)·2) 외의 부분”을 “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다.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선박

라.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
(押航艇船)

마. 「항만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(이하 “항만건설작업선”이라 한다)

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제외 선박) ① 「선박안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.	제2조(적용제외 선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</u>	3. <u>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.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</u>
가. <u>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(平水)구역{호소(湖沼: 호수와 늪)·하천 및 항내의 수역(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)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. 이하 같</u>	가. <u>평수(平水)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}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
1) 「항만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(이하 “항만건설작업선”이라 한다)

2)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

나.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(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
1) 항만건설작업선

----- 선박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<단서 삭제>

<삭 제>

<삭 제>

나. 연해구역-----

----- 사용되는 선박 및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<단서 삭제>

<삭 제>

2) 압항부선(押航桴船: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)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③ 제1항제3호가목1)·2)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)·2)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

<삭 제>

다.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선박

라.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(押航桴船)

마. 「항만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 (이하 “항만건설작업선”이라 한다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제3호 -----

를 받아야 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834